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여 왔으나, 그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에서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농어촌정비법」 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애매모호한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를 “구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규약 이라 함은”을 ““규약”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혜지역 이라 함은”을 ““수혜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4.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구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수리계”로, “당해 기반 시설의 이용자중”을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기재하고,[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구역”을 “지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리계원중”을 “수리계원 중”으로, “2인이내”를 “2인 이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징수”를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등”을 “구미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법 시행령 제9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재정”을 “조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얻어야”를 각각 “받아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으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계의명칭				
계 원 수				
계구역면적				
수혜면적				
농 업 기 반 시 설 현 황				
시설명	시설형태	소재지	수혜면적	비고
구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수입인지
				없음
※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시 장
근 거 법 규	제4조 (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 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해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시 장)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 등록증교부

수 리 계 등 록 증

계 의 명 칭 :

성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

주소(소재지) :

구 역 면 적 : ha

수 혜 면 적 : ha

구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참 조 :									
제 목 :									
1. 수리계 현황									
조직일자	계원수(인)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수혜면적	수리계 대표자명			
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	부과 계원수	부과내역		징수액(원)	징수율(%)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			
		현금(원)							
3. 예산, 결산 및 적립금 상황									
예산액	결산액	결산액 증개, 보수비				감 가 상 각 비			
		보조	차입금	자부담	계	작년 이월	당년 실적	당년 사용액	충당금 전액누계
					원				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설명	정비부분	경비소요액			비고				
		현금	기타	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u> <u>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u> 제1조 (목적) 이조례는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농업생산기반시설</u>이라 함 은 <u>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u> <u>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u> <u>다.</u> 2. <u>규약</u>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 약관을 말한다. 3. <u>수혜지역</u>이라 함은 수리계 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 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 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	<u>구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u> <u>관한 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농어촌</u> <u>정비법</u>」 제12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3조 공사관리지역 밖 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 리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 1. “<u>농업생산기반시설</u>”이란 「<u>농</u> <u>어촌정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u>규약</u>”이란 ----- ----- -----. 3. “<u>수혜지역</u>”이란 ----- ----- ----- -----

을 말한다.

<신 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①시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

-----.

4.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①구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

----- 그 -----

-----.

②----- 수리계-----

----- 기
반시설의 이용자 중-----

-----.

제4조 (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에 따라 -----

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
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
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
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수리계 구역

4. ~ 9. (생 략)

② (생 략)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
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 (수리계의 등록) -----

----- 별지

제2호서식-----

-----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

1. · 2. (현행과 같음)

3. ---- 지역

4.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생 략)

제9조 (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 방법 ·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11조 (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생 략)

③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1. · 2. (현행과 같음)

제9조 (임원) ①-----
--- 수리계원 중-----
----- 2인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경비의 부과) ①-----

부과 · 징수--.

②-----

-----.

1. (현행과 같음)

2. -----
----- 구미시-----

3. (현행과 같음)

③-----
----- 법
시행령 제93조-----
-----.

제12조 (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⑤ (생략)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 조
정-----

-----.

제13조 (예산 및 회계) ①-----

----- 받아야 ---
--.

② (현행과 같음)

③-----

받아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받아야 -----.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u>당해</u>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u>해당</u> <u>농업기반공사</u>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u>관할 지방자치단체</u> ③ (생 략) 제16조 (지도·감독) ① (생 략)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u>별지 제4호서식</u>]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u>해당</u> ----- ----- ----- -----. 1. ----- <u>한국</u> <u>농어촌공사장</u> 2. ----- -- <u>시장</u>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u>별지 제</u> <u>4호서식에 따라</u> ----- -----.
---	---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수리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조직 기준

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가. 운영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관리비 전액

나.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 기준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소 관 부 서		농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이 현 선
	팀 장	정 은 진
	담 당 자	공 병 권 (480-5797)